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6년 6월 5일
- 회부일자 : 2006년 6월 5일

3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제정에 따른 일부조항 정비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중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장기에치기 금액으로 함 (안 제3조제2항)
-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별도 관리함 (안 제3조제3항)
-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중 민간전문가를 위촉함(안 제8조)